

#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8일

종 특 별 자 치 시 장

1. 처분대상 :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2. 처분내용
  - 실내 및 실외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
  - 그 외 장소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을 강력 권고
  - 허가된 마스크로 착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함  
기존에 발령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는 해제함(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-387호)
  - (대상자 정의)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~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
    - (관리자) 시설·장소의 관리·총괄 책임자
    - (운영자) 시설·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
    - (이용자) 해당 시설·장소, 운송수단, 지역에 출입·방문한 모든 자\*
  - \* 관리자·운영자, 종사자 등을 포함
  - (장소·대상) 중점관리·일반관리시설, 대중교통(버스, 택시), 집회·시위장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, 주·야간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·행사의 사업주(책임자), 종사자, 이용자, 주최자, 참석자 등

# ①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·장소 등 : 현재 1단계 적용

## ◆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

### < 1단계 >

-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**중점·일반관리 시설, 대중교통, 집회·시위장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 및 주·야간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, 지자체에 신고·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**

### < 1.5단계 >

- 1단계 시설·장소+실외 스포츠 경기장

### < 2단계 >

- 실내 전체,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

### < 2.5단계, 3단계 >

-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

## ○ (다중이용시설 등 : 중점·일반관리시설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·일반관리시설( ) 의무화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- **중점관리시설(9종):** 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신고면적150㎡ 이상)
- **일반관리시설(14종):**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이·미용업,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, 독서실·스터디카페

## ○ (대중교통) 버스·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
## ○ (집회·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·시위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

-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, 시위

## ○ (의료기관·약국) 의료기관·약국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- 「의료법」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
-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약국

- (요양시설, 주·야간보호시설)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( )·종사자
  -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
  -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(종교시설) (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포함)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- (실내 스포츠경기장) 실내 스포츠 행사(농구·배구 등)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- (고위험 사업장)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\*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  - \*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
- (500인 이상 모임·행사) 500인 이상 모임·행사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

<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</li> <li>•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</li> <li>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<b>의학적 소견</b>을 가진 사람</li> </ul>
<b>상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</li> <li>• 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</li> <li>• , 양치 등 활동을 할 때</li> <li>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<b>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</b></li> <li>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<b>공연</b>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 <b>방송 출연</b>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<b>사진 촬영</b>(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), <b>수어통역을 할 때</b></li> <li>•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<b>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</b></li> <li>•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<b>예식을 할 때</b></li> <li>•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 등)가 있을 때</li> <li>• 본인 확인을 위한 <b>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</b></li> </ul>

### 3. 처분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의2,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,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\* 감염병예방법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 (개정 '20.8.12 및 시행 '20.10.13)

4. 처분사유 : 세종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개인방역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로의 전파 및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
5. 처분기간 : 2020. 11. 13.(금) 0시부터 ~ 별도해제 시
6. 과태료금액 :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
7. 단속방법
  -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
  -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  - ※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8. 마스크 종류 :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  - 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9. 착용법 :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
10. 효력발생일 : 2020. 11. 09. 0시 부터
11. 기타사항
  - 처분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명령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
- 이 명령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( ,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)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